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 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212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총괄 검토의견	4
1. 개요	4
가. 제정안의 내용 및 구성	4
나.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배경	6
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현황	9
라. 주민자치회 관련 제21대 국회의 논의 경과	11
2. 검토의견	14
가.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설치 관한 법률의 제정 필요성	14
나. 조문별 검토의견	17
(1) 목적, 정의 및 기본원칙 등	17
(2) 주민자치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	20
(3) 주민자치회의 규약, 자치위원회 및 위원의 의무	24
(4) 주민자치회장, 간사 및 사무국, 감사, 분과위원회	32
(5)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의 수립·시행	35
(6)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및 주민자치협의체	39
(7) 부칙	43
[참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결과 요약	4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 정 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1.
3. 회부연월일 : 2024. 7.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민선지방자치가 출범한지 30여년이 지났으나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법제도는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는 현실임.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주민투표, 주민조례발안, 주민소환 등 주민참여권 강화 제도 외에 풀뿌리 단위에서 주민자치의 체계를 규정하는 내용은 미흡한 상황임.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주민자치 중심조직인 주민자치회가 명시되어 있지만 시범적 운영으로 제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시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의 법적 성격과 지원체계에 대한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그 외 주민참여형 정책과 관련한 법안들은 대부분 보조금 지원, 종합계획수립, 인증·전달체계 등

지원 근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주민의 공적 참여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2013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 온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고 자치적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공간으로서 소생활권인 읍·면·동을 산정해 주민의 공적 참여 권한을 부여하고, 주민자치 활성화의 핵심 수단인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추천제 등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근간인 ‘풀뿌리 주민자치’에 대한 법률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제안이유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근거가 없고 최근 공포된 전부개정법률에도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주민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나.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치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함(안 제3조).
-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관할 지역의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6조).
- 라.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화합 및 공동체 형성,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7조).
- 마. 주민자치회는 18세 이상의 주민 또는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사업장의 대표자·종사자 등으로 구성함(안 제8조).
- 바.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안 제10조).
- 사. 주민자치회는 총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 규약의 제정·개정 및 폐지, 자치계획 등을 심의·의결함(안 제16조).
- 아.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함(안 제18조).

Ⅲ. 총괄 검토의견

1. 개요

가. 제정안의 내용 및 구성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함) 제40조제6항¹⁾의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려는 것으로, 19개 조의 본칙과 2개 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

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정안의 구성>

조문	규정사항	내용
본칙		
제1조	목적	- 주민자치 활성화 및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주민 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	정의	- 주민자치회, 자치위원회, 주민총회 정의
제3조	기본원칙	-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 주민참여 및 자치활동의 진흥 - 정치활동 금지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종합적 추진 - 기본원칙의 존중 - 행·재정적 지원 의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해 우선적용
제6조	주민자치회의 설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읍·면·동에 주민자치회 설치 가능 - 일정한 경우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2개 이상 설치
제7조	주민자치회의 기능	- 주민의 화합, 공동체 형성,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 자치계획 수립 등
제8조	주민자치회의 구성	- 자치회원은 18세 이상의 주민 또는 해당 읍·면·동 소재 사업장의 대표자·종사자 등 - 50명 이내의 자치위원을 정하여 자치위원회 구성
제9조	주민자치회의 규약	-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규약 제정
제10조	자치위원회	- 공개추첨을 통해 위원 구성(50명 이내) - 자치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자치위원회구성관리단 설치·운영 가능
제11조	위원의 의무 등	- 사익 추구 및 정치활동 금지 -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일정 비용 지급 가능
제12조	주민자치회장	- 회장 1명(임기 2년, 연임 가능) - 조례에 따른 부회장
제13조	간사 및 사무국 등	- 간사 1명(자치회장이 임명) -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
제14조	감사	- 업무 및 회계 감시를 위한 감사 1명
제15조	분과위원회	-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 - 분과위원회는 위원·주민으로 구성
제16조	주민총회	- 연 1회 이상 개최 - 규약의 제·개정, 자치계획 등 심의·의결
제17조	자치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매년 주민자치회 운영 등 자치계획 수립·시행
제18조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재정적 지원 가능 - 주민참여예산기구에 자치회원 참여 보장 -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행
제19조	주민자치협의체	-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계 가능
부칙		
제1조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제2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 시범실시 주민자치회에 대한 경과조치

나.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배경²⁾

1999년 김대중 정부는 작은정부를 실현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서비스 환경을 구축함과 동시에 주민자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읍·면·동 기능전환 정책’³⁾을 추진하였음.

‘읍·면·동 기능전환 정책’은 청소·주택·교통·일반행정 등의 사무를 시·군·구로 이관하여 시·군·구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읍·면·동에서는 민원발급, 사회복지와 같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무를 수행하여 읍·면·동의 주민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사무조정에 따라 발생한 읍·면·동 사무소의 유휴시설·공간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자치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의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것이었음.

이는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이 모여 지역문제를 검토하고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지원하고, 해당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려는 목적이었음.

2) 아래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주민자치회 모델 재설계 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2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

3) 당초 읍·면·동의 폐지 또는 축소가 논의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기능전환으로 결정됨.

그러나 실제 운영과정에서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가 문화·여가·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능만을 수행하였고,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임명하는 구조로 인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센터(前 동사무소)의 하부기관화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한편, 주민자치회의 도입에 관한 논의는 2010년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음.

당시 행정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시·군 통합 등 다양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해당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화가 이루어질 경우 약화될 수 있는 주민참여 및 민주성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주민자치회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또한, 기존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상술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주민자치회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2010. 10. 제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가 최초로 마련되었음.

이후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시범실시 기본방향 마련 등의 후속절차를 거쳐 2013. 5. 제정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2013. 7. 전국 31개 지

역을 대상으로 최초의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이 실시되었음.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비교>

구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근거	조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및 조례
연혁	- 읍·면·동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도입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설치(2000)	-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제정 시 관련 근거 마련(2010) - 31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시범운영(2013)
현황	- 1,703개 읍·면·동 운영('23.12.)	- 1,531개 읍·면·동 운영 ('23.12.)
위촉권자	읍·면·동장	시·군·구청장
위원정수	25인 이내 평균 22명(22. 12.)	자율적으로 결정 평균 32명(22. 12.)
기능	조례준칙안¹⁾에 따른 기능 -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주민의 문화·복지·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심의 -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심의 -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심의 - 기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심의	법률상 기능 - 구역 내 주민화합 및 발전 - 지자체 위임·위탁사무의 처리 - 기타 업무 표준조례안²⁾에 따른 기능 - 주민자치 업무: 자치계획 수립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 협의업무: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 수탁업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재정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주민자치센터 운영수익 + 위탁사업 수익 + 주민세 상당액 등 현안사업비 지원

¹⁾조례준칙안: 2005년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 개정안」

²⁾표준조례안: 2023년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 개정안」

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현황

2013. 7. 전국 31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최초로 이루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시범실시 지역이 확대되어 2023. 12. 기준으로 전국 3,530개 읍·면·동 중 1,531개의 읍·면·동(43.3%)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고 있음.⁴⁾

<2023년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현황>

(단위: 개)

합계 (총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미운영
	계	승인	미승인		
3,530	1,531	1,240	291	1,703	296

※승인: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은 주민자치회

<연도별 주민자치회 설치 현황>

(단위: 개)

구 분	2013.7.	2014	2018	2019	2020	2022	2023
설치 읍·면·동	31	47	95	408	626	1,271	1,531

현재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는 2012년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제시한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 모델 중 협력형 모델에 해당함.

4) 참고로,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는 1,531개의 읍·면·동 중 1,240개의 읍·면·동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이며, 291개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음. 또한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은 읍·면·동은 총 1,316개이나, 이 중 76개의 읍·면·동은 승인 후 미운영 중임.

협력형 모델은 주민자치위원회를 보완·발전시킨 모델로 읍·면·동사무소와 주민자치회가 대등한 지위에서 병렬적으로 설치·운영되며, 읍·면·동사무소는 현행과 같은 행정기능을 수행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기능, 위탁사무 처리기능, 읍·면·동 행정기능 중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심의기능 등을 수행함.

협력형 모델에서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사무소와의 관계 및 역할 등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유사하지만, 읍·면·동 행정기능에 대한 협의·심의권을 부여받아 권한이 강화되었으며, 위원의 선출 방식을 변경하여 주민대표성과 전문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게 됨.⁵⁾⁶⁾

참고로, 2020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를 수행(2019. 6. 기준)하였으며⁷⁾, 현재 2024년 기준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를 수행 중으로 해당 결과는 2024년 12월경 발표될 예정이다.

5) [참고자료]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현황 및 향후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

「주민자치회 모델 재설계 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2

6) 통합형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사무소에 대한 의결 및 집행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읍·면·동사무소 및 소속 공무원을 주민자치회(의결기구)를 위한 집행기구로 전환하는 모델이고, 주민조직형은 기존 읍·면·동 주민센터를 폐지하여 주민자치회가 직접 자치사무를 결정·집행하는 형태로서 시·군·구의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모델임.

7)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
2020년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결과는 p.45 [참고]에 기재함

라. 주민자치회 관련 제21대 및 22대 국회의 논의 경과

정부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하고, 시범실시 근거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⁸⁾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⁹⁾을 제21대 국회에 제출하였음.

그러나 해당 법률안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비교하여 주민자치회가 더 우수한 제도인지 여부,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간의 관계, 하나의 읍·면·동 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병존 가능성, 주민자치회의 정치화 가능성 등에 대한 이견이 있어, 추

8) 의안번호 제2101426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안 제26조(주민자치회) ① 주민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의 화합 및 공동체 형성
2. 읍·면·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한 읍·면·동장과의 협의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4.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5.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자치회에 대표자 1명을 포함한 위원을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회원 중에서 지역 내 주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가 선정하며, 명예직으로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주민자치회는 그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주민자치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자치회가 규약으로 정한다.

9) 의안번호 제2101432호

후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는 반영하지 않았음.

이후 주민자치회 관련 사항의 「지방자치법」 이관 및 시범실시 근거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 개정안¹⁰⁾ 및 주민자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안¹¹⁾이 다수 발의되어 수차례 논의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찬반양론이 제기되었으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또한, 22대 국회에서도 주민자치회의 본격적인 도입과 관련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¹²⁾이 발의되었으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107394호(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7797호 (김영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7809호(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2038호(박완수의원 대표발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107810호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7904호(한병도의원 대표발의)

11) 「주민자치 기본법안」(김영배의원 대표발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두관의원 대표발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철민의원 대표발의)

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00412호(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561호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00411호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22대 국회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에 대한 주요 의견>

찬성취지 의견	반대취지 의견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시작된지 10년 이상되었는데, <u>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근거 법률이 없는 것은 문제</u>라는 의견 ◦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공존되고 있는데 <u>명확한 정비가 필요</u>하다는 의견 ◦ 현재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u>행정의 시각이 아닌, 현장에서 행정이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u>는 의견 ◦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주민자치회가 <u>자율적으로 논의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u>할 수 있다는 의견	◦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에 중 어떠한 형태를 선택할지는 <u>주민들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u>하므로 현재와 같이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의 수가 <u>최근에 대폭 증가하였으므로, 시범실시의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u>는 의견 ◦ 주민자치회가 <u>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u>하여야 한다는 의견 ◦ 지방에 존재하는 <u>새마을·자유총연맹·이장협의회</u>와 같은 단체와 주민자치회의 <u>관계 등을 먼저 정립</u>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자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록을 바탕으로 작성

2. 검토의견

가.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설치 관한 법률의 제정 필요성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이나 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로,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두 가지 성격을 가짐.

‘단체자치’는 일정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역적 단체가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지역의 행정을 독자적인 권한으로 처리하는 형태를 말하며,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주민 의견을 결집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음.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의회의 구성과 1995년 주민 직선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 선출로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를 마련하였으나, 지방으로의 사무이양 저조, 자체 수입의 지역 간 불균형, 저조한 주민참여 등이 지방자치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주민참여와 관련하여, 2022. 1. 13. 시행된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주민자치의 원리¹³⁾와 주민의 권리¹⁴⁾등을 명시하였으나, 풀뿌리 단위에서

13)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4)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의 주민자치를 규정하는 내용은 단체자치에 관한 규정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제정안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시범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를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지역발전을 위한 읍·면·동 주민의 의사결정기구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 의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으려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인 ‘풀뿌리 주민자치’에 대한 법률적 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의의가 있으나, 주민자치회에 관한 별도 법률 제정의 필요성 및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근거로 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성과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우선, 주민자치회에 관한 사항을 제정안과 같이 별도의 법률을 통해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의 전반에 대해 담고 있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개별법의 제정 실익과 기존 법체계 측면을 고려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현재 우리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관련 사

제17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및 이해석의원 대표발의)이 회부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겠음.

또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실시 중에 있으므로, 제정안과 같이 주민자치회를 본격적으로 도입·운영할지 여부는 시범 실시되는 주민자치회의 성과와 운영상 보완점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¹⁵⁾.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지원을 위한 별도 법률의 제정보다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아 제정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입장임¹⁶⁾.

15)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현재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의 운영실태 및 성과에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 하반기 중으로 그 결과가 공개될 예정임.

16)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 시 정부의견: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읍·면·동도 다수이며, 주민자치회의 정치화 등 운영현황을 고려할 때, 시범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나. 조문별 검토의견

(1) 목적, 정의 및 기본원칙 등(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정안은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주민자치회·자치위원회·주민총회에 관하여 정의하며, 주민자치회에 관한 기본원칙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0조(주민자치회의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⑥ 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 2. “자치위원회”란 주민자치회의 업무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

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내에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주민자치회의 주요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회의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자치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제3조의 기본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또는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우선 제1조(목적)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및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이하 “표준조례안”이라 함)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의 근거가 되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0조제6항에서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은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제정안의 정의규정(제2조)은 “주민자치회”, “자치위원회”, “주민총회”의 뜻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의 운영상 중요한 의미를 갖고 제정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규약” 및 “자치계획”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그 뜻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한편, 제3조(기본원칙)는 표준조례안과 동일하게 주민자치회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①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②주민참여보장 및 자치활동 진흥, ③자율적인 운영, ④정치활동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주

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추진 및
 행·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2) 주민자치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화합 및 공동체 형성, 지역
 발전과 복리증진 및 자치계획의 수립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
 며, 주민자치회 회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자치위원회 구성의 근거
 를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
제6조(주민자치회의 설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관할 지역의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려는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읍장·면장·동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를 2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 1. 도서 또는 벽지 2. 인구 또는 면적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제4조(설치 등) ①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관할지역의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면 주민자치회 또는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또는 지회)를 설치 할 수 있다. 1. 도서 및 벽지 지역 2. 인구·면적 등 지역여건상 분회(또는 지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3. 그 밖에 지리적 여건 또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주민자치회의 추가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7조(주민자치회의 기능)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의 **화합 및 공동체 형성**
2.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3. **자치계획의 수립**
4. 읍·면·동의 사무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한 읍·면·동장과 의 협의**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6.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7.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

제8조(주민자치회의 구성) ① 주민자치회는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자치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사업장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
3.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

3. 기타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읍·면·동(또는 동,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시·군·구 및 읍·면·동(또는 동,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0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해당 읍·면·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

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를 말한다)의 교직원 4.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② 자치회원은 제16조에 따른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제7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회원 중 50명 이내의 자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정하여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的人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

(주민자치회의 설치)

제정안 제6조는 표준조례안과 동일하게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지역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읍·면·동이 도서 또는 벽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자치회 분회(또는 지회)’를 설치하도록 한 표준조례안과 차이가 있음.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참여기구로서 기능하는데, 동일한 읍·면·동에 2개 이상의 주민자치회가 설치될 경우 읍·면·동 단위에서 각 주민자치회의 지위 및 주민자치회 간의 관계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주민자치회의 기능)

제정안 제7조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에 더하여 표준조례안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반영하여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주민자치회의 구성)

제정안은 18세 이상으로서 ①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사업장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 ③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각급학교의 교직원, ④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주민자치회의 회원으로 규정하고, 해당 회원 중 50명 이내에서 자치위원을 정하여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반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읍·면·동의 주민’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표준조례안은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해당 읍·면·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을 주민자치회 위원회의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나, 주민자치회 회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제정안은 주민자치회 회원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각급학교의 교직원, 사업장의 대표자·종사자 등을 주민자치회의 회원으로 포함하는 점에서 ‘읍·면·동의 주민’만을 주민자치회원으로 보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차이가 있으므로 적절한 회원의 범위에 관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

(3) 주민자치회의 규약, 자치위원회 및 위원의 의무(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정안은 주민자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및 위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
제9조(주민자치회의 규약)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제7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표준 규약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자치위원회) ① 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추천을 거쳐 구	제25조(운영세칙) 기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해당 읍·면·동에서 1년 이상 거주

성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주민 자치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공개 모집에 신청한 자치회원

2.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지역의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3.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예정인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특정 성별·연령대·직업 등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자치위원회구성관리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를 구성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의 명단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자치위원 명단을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으로 위원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

한 주민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0조 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10조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추첨하거나 선출한다. 다만, 위원 중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한 것으로 본다.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직무태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정한다.

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 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위촉한다.
- ⑦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⑧ 삭제
- ⑨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면·동장이 정한다.
- ⑩ 시장(또는 군수·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 추천 또는 선출을 위하여 읍면동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선정위원회는 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또는 군수

·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치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제16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

한다. ②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u>할 수 있다. ⑤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9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주민자치회의 규약)

제정안은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총회의 의사정족수에 관한 사항, 주민총회의 개최·진행 등에 관한 사항 등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표준규약을 정하도록 규정함.

주민자치회의 규약은 주민자치회가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제정하는 규범이므로 규약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자주성·자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성격상 규약으로의 위임이 타당하지 않은 사항(수당

에 관한 사항) 및 주민자치회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는 규약으로의 위임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규약으로 위임할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치위원의 구성 및 해촉)

제정안은 ①주민자치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공개 모집에 신청한 회원과 ②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지역의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을 통해 자치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의 결격사유로 ①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②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③다른 주민자치회 위원을 정하고 있음.

또한, 자치위원이 회원이 아니게 된 경우 등에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의 선출 및 해촉에 관한 비교〉

	제 정 안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
위원선출 방식	- 공개추첨	- 공개추첨하거나 선출 ※ 일부 당연직 위원을 둘 수 있음
위촉 절차	- 읍·면·동장이 사·군구청장에게 명단 제출 - 시·군·구청장이 위촉	- 주민자치회가 사·군구청장에게 명단 제출 - 시·군·구청장이 위촉
결격 사유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 -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 -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	- 지방의회 의원 -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
해촉 사유	- 회원이 아니게 된 경우 -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사익추구금지 의무 위반 시 - 정치활동 금지의무 위반 시 - 직무태만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 니한 경우	- 해당 읍·면·동에서 1년 이상 거 주한 주민이 아닌 경우 - 다른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 된 경우 - 선거운동을 하거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시 - 권한남용 금지의무 위반 시 - 사익추구금지 의무 위반시 - 직무태만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 니한 경우
임기	- 2년, 한 차례 연임가능	- 2년, 연임 가능
위원의 대우	- 명예직으로 하되, 직무수행에 필 요한 비용 지급	-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 서 실비 및 수당 지급

제정안의 위원의 선출 및 해촉 등에 관한 규정은 표준조례안과 대부분 유사하며, 공개추첨을 통하여 위원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자치위원회의 주민대표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제정안은 ‘공개 모집에 신청한 회원’뿐만 아니라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여 공개추첨을 실시하는데, 주민대

표성의 항상 측면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제정안은 표준조례안과 달리 결격사유로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어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중립성 및 집행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위원의 의무 등)

제정안은 자치위원회 위원 의무로 ①사익추구금지 의무, ②정치활동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은 명예직으로 규정하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규약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정안은 표준조례안과 동일하게 위원의 정치활동 금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기구로서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거 관여 금지의무, 정당가입 금지의무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한편,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표준조례안에서는 연임이 계속적으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험 있는 위원의 연임에 따른 전문성 및 안정성 확보의 이점과 연임 제한규정을 통한 새로운 주민의 참여 확대, 주민자치회 구성의 역동성 향상 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4) 주민자치회장, 간사 및 사무국, 감사, 분과위원회(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정안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감사 1명을 두도록 하며,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과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 정 안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
제12조(주민자치회장) ①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또는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회장을 둘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간사 및 사무국 등) 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자치회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른 간사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사무국의 직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간사 또는 사무국) 삭제

〈삭제되기 이전의 규정〉

제12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하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자치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참여하는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운영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규약으로 정한다.	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

제정안의 주민자치회장, 간사 및 사무국, 감사, 분과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표준조례안과 대부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음.

다만, 제정안은 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의 보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주민자치회의 규약으로 해당 사항을 정하게 되는데,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안에서 대략적인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의 수립·시행(안 제16조 및 제17조)

제정안은 주민총회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주민총회의 심의·의결사항과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며, 그 밖의 운영방식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또한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주민 복리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자치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제 정 안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
제16조(주민총회) ① 주민자치회는 총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민자치회 규약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제17조에 따른 자치계획 3.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4.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견 제출 5. 읍·면·동의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출 6. 그 밖에 주민자치, 지역현안 등에 관한 사항 ③ 주민총회의 의사정족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고, 출석한 자치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에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	제14조의2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면·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면·동의 다음년도 자치(마을)계획안 4.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기타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

장이나 읍·면·동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주민총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은 필요한 경우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주민총회에 참석한 자치회원은 누구든지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자치위원회는 자치회원의 주민총회 참여 촉진과 주민총회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총회 안건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자치회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⑧ 주민자치회는 규약에 따라 주민총회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총회의 개최, 진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으로 정한다.

제17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자치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자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그 밖에 주민 자치 및 주민 복리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

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또는 군수·구청장) 및 해당 읍·면·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이상 공개한다.

제14조의3 (자치(마을)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마을)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③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자치계획을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u>대한 편성안</u>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의한 자치(마을)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마을)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마을)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마을)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u>통보</u>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의해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으로 부터 <u>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마을)계획을 확정·의결</u>하고, 확정된 자치(마을)계획을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

(주민총회)

제정안은 읍·면·동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로서 ‘주민총회’를 두도록 하여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지역의 의사를 결정하도록 함. 제정안은 주민총회의 개최를 재량에 맡기고 있는 표준조례안과 달리 연 1회 이상의 개최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현재 주민총회의 의사정족수는 각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을 통해 규정되는데, 대부분의 주민자치회는 주민 총수의 0.2%~0.5% 범위에서 의사정족수를 결정하고 있음. 지역주민의 대표 의사결정 기구로서 주민총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준의 의사정족수 범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겠음.

(자치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정안은 주민자치회가 매년 ①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②주민총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 한 후, ③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표준조례안은 ①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②주민자치회가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③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주민자치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④주민자치회는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하도록 함.

자치계획에는 지역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및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등 집행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표준조례안과 같이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장)과의 협의과정을 거친 후, 자치계획을 확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음.

(6)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및 주민자치협의체(안 제18조 및 제19조)

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에 자치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회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주민자치회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또한, 주민자치회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 정 안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7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해당 읍·면·동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u>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두는 경우 자치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치회원의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하여 <u>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u>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또는 동, 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제5호에 따라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u>주민자치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u> ⑤ 읍·면·동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주민자치협의체) 주민자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감독) ①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u>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2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재정적 지원)

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자치회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자치회에 대한 재정지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과

같이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¹⁷⁾ 등’을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자료 제출 요구 및 장부·서류 등 검사)

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자치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주민자치회에 대한 장부 및 서류 검사는 주민자치회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검사를 수인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이므로 관계공무원의 증표제시의무 등의 절차를 제정안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의견제출)

제정안은 읍·면·동장이 ①행·재정적 지원, ②주민참여예산기구에
의 참여, ③역량강화 교육, ④자료제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17)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재정 집행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세 균등분 수납액’을 주민자치회가 시행하는 주민자치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주민세 환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견제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 또는 의무부과 등에 관한 것이므로 읍·면·동장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가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주민자치협의체)

제정안은 주민자치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계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협의체의 구성·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제정안은 주민자치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협의체 구성·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후,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7) 부칙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시행일을 정하고 있고, 제정안 시행 당시 종전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0조제7항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를 제정안에 따른 주민자치회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

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7항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정안의 시행일과 관련하여 제정안 공포 이후 대통령령 및 조례·규약 등의 제·개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행일을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제정안은 시범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에 대한 경과조치만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함께 두는 방안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와의 관계를 부칙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임.

문 의 처
02)6788-5334

[참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결과 요약

주민자치회 실태분석	○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성과에 대한 인식 - 5점 척도 중 3.5에서 4점 사이에 분포하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u>인식이 비교적 양호</u>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이후에는 40%이상의 응답자들이 <u>행정 및 주민간의 소통이 개선된 것으로 응답</u>하였음. - 2017년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성과평가와 동일한 문항을 비교했을 경우 전반적으로 인식 정도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주민자치회의 위상 -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주민자치회를 <u>주민의 대표 자치기관이자, 읍면동과 대등한 관계이고, 주민의 대표</u>라고 생각함.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u>주민자치사업이 주된 역할</u>이라고 하였음. ○ 2018년 이후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사항 - <u>위원 선출과 정수 조정, 주민총회와 재정지원에 관해서는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u>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사항에 대한 <u>효과성도 높은</u> 것으로 나타남. - <u>제도개선 사항 전반에 대해서도</u>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u>긍정적으로 평가</u>하였음. ○ 제도 개선사항의 중요성 - 사전(사후)교육 이수제와 정기적 주민총회, 자치계획 수립 등에서 <u>중요성이 높은</u> 것으로 나타남. -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수 확대는 그 <u>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u> 것으로 나타남. ○ 주민자치회 운영의 향후 개선점 - 주민의 <u>낮은 참여율과 전문성 개선</u>이 가장 시급한 개선점으로 꼽힘. - <u>지자체 재정 지원, 자체 자원 확보 등 재정적인 면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u>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강화할 사업 또한 <u>주민자치회 위원 역량강화교육 지원</u>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보임.
-----------------------	---

주민자치회 성과평가	○ 평가 항목은 크게 <u>근린자치 기반조성(행정적, 재정적 지원),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주민자치회 운영 목적 달성의 세 가지 항목</u>으로 나누어 구성되었음. ○ 근린자치 기반조성 분야에서는 주민자치회 전담공무원 배치와 주민자치회 자체적인 <u>홍보가 비교적 양호한 것에 비해 시군구의 홍보가 다소 부족한 것</u>으로 평가되었음. ○ 동 분야의 지자체별 평가결과의 차이는 <u>주민자치회 관련 조례의 내용이 주된 요소</u>로 작용하였으며, 조례의 내용 중에서는 최근 조례 제개정, 자치계획과 주민총회 운영의 명시 등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 ○ 반면에 주민자치회의 <u>재원과</u> 관련해서는 전체 백분위 평가점수가 25% 가량으로 <u>조례에 반영된 지자체가 많지 않았는데</u>, 이것은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u>주민자치회의 재정여건 개선의 높은 필요성</u>과 맥락을 같이하는 평가결과라고 볼 수 있음. ○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분야는 주민자치회 구성, 운영 및 재원, 사업의 세 가지 세부항목으로 평가하였으며,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재원이 비교적 양호하게 평가되고, 주민자치회의 구성은 비교적 낮게 평가되었음. ○ 주민자치회 운영 목적 달성 분야에서는 주민총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 참여인원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주민총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 건수보다는 <u>주민참여인원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u>되었음.
-----------------------	--